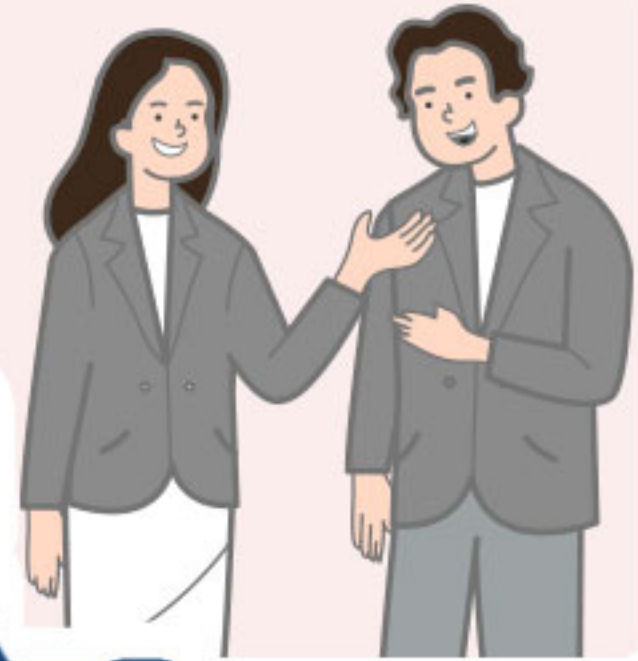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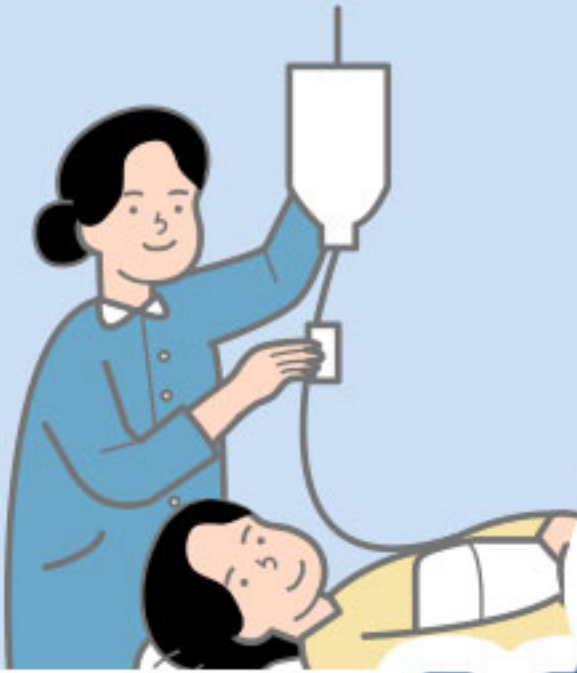




건강보험

고용보험



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

국민연금

산재보험





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, 소상공인의
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



**3개월간
 납부 유예**



**3~6개월간
 보험료 30% 감면**



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

산재보험 감면

대상

- 30인 미만 사업장
- 1인 자영업자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



방식

6개월간
30%감면



적용시기

3~8월
부과분



근로복지공단

1588-0075

산재보험 납부유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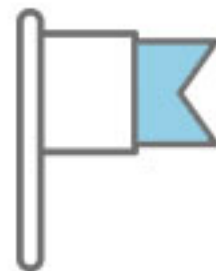
대상

- 30인 미만 사업장
- 1인 자영업자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



방식

3개월간
납부유예



적용시기

3~5월
부과분



※건설업·별목업 사업장은 '20.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(신청기한:5.15까지)

신청 필요

신청 · 문의

[건설업-별목업외 사업장] 국민건강보험공단 ☎1577-1000

▶ 5.11일까지 → 3·4·5월 분 신청 ▶ 6.10일까지 → 4·5월 분 신청 ▶ 7.10일까지 → 5월 분 신청

[건설업-별목업 사업장] 근로복지공단 ☎1588-0075

고용보험 납부유예

대상

30인미만
사업장



방식

3개월간
납부유예



적용시기

3~5월
부과분



※건설업·별목업 사업장은 '20.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(신청기한:5.15까지)



신청 · 문의

[건설업-별목업외 사업장] 국민건강보험공단 ☎1577-1000

▶ 5.11일까지 → 3·4·5월 분 신청 ▶ 6.10일까지 → 4·5월 분 신청 ▶ 7.10일까지 → 5월 분 신청

[건설업-별목업 사업장] 근로복지공단 ☎1588-0075

건강보험 감면

대상

보험료 하위
20~40%



방식

3개월간
30%감면



적용시기

3~5월
부과분



국민건강보험공단
1577-1000

국민연금 납부예외

대상

가입자 중
신청자



※소득감소요건 충족 필요

방식

3개월간
납부예외



적용시기

- ① 3~5월
 - ② 4~6월
- 부과분



신청방법

국민연금공단 ☎1355

- ① 3·4·5월분 신청 → 4.16 까지
- ② 4·5·6월분 신청 → 5.15 까지



힘내라-대주정부 힘내라-대한민국

“국민과 함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”

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
**정부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
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**

